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학교)의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0	지적사항 없음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1	0	지적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0	지적사항 없음	지적사항 없음	
4. 부속병원 관련	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계	1	0	0	

- 붙임 : 1. 학교법인 삼육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삼육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15년 4월 7일

학교법인 삼육학원
 감사권기용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296 호)
 감사조승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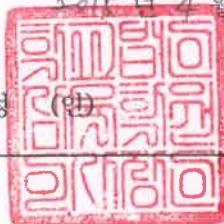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김대성 (인)

2015년 4월 7일



피감사 기관장

삼육대학교

총장 김상래 (인)

2015년 4월 7일





(별지 제1의1호 서식)

학교법인 삼육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4 년 3 월 1 일부터 2015 년 2 월 28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1. 법인 수익사업회계 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p> <p>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에 의거 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정수익률 3.5%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일부 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정수익률 기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바 해당 수익사업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1. 법인 수익사업회계 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p> <p>삼육대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수익률이 낮은 일부 임대사업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료 인상 및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한 임차인 변경 등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p>
<p>(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p> <p>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김 대 성 점인 (사인)  </p>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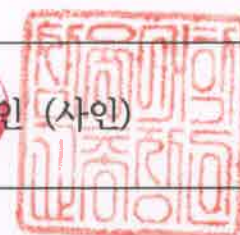
(별지 제1의2호 서식)

삼육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4 년 3 월 1 일부터 2015 년 2 월 28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지적사항 없음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삼육대학교 총장 김 상 례 직인 (사인)	



(교비회계 · 부속병원회계)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학교)의 2014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학교)의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15년 4월 7일

학교법인 삼육학원
감사 권기용
감사 조승교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법인실장
성명 박세현

